

소액수의(용역) 견적제출 안내 공고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용역명: 2026년 하반기 내곡터널(하행선) 정밀안전점검 용역
- 나. 용역현장: 성남시 수정구 내곡터널(하행선)
- 다. 용역기간: 착수일로부터 120일
- 라. 용역내용: 과업지시서 참조
- 마. 기초금액: 금30,884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- 바. 공고기간: 2026. 8. 4.(화) ~ 2026. 8. 11.(화)
- 사. 제출기간: 2026. 8. 7.(금) 15:00 ~ 2026. 8. 11.(화) 15:00
 - ※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.
- 아. 개찰일시: 2026. 8. 11.(화) 16:00
- 자. 개찰장소: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
- 차. 현장설명: 생략

※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(공제) 가입대상입니다.

2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,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의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-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(교량 및 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 또는 종합)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동법 제28조의 2에 의한 안전점검 전문기관(토목 분야)
-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(토목 분야)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(토목 분야)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(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수리 또는 항만 또는 종합)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(FMS)에 등록한 책임기술자(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격,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보유한 자)를 보유한 업체

※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(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)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※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증명서 및 교육이수증, 기술자보유증명서(관련 협회 발급) 및 FMS 등록 확인서 등 시행령 [별표5]의 자격요건(입찰공고일 기준)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.

- 나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, 시공,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- 다. 업체의 상호(법인 명칭) 및 대표자(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)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.
- 라.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.
- 마.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,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바. 공동계약 불가합니다.
- 사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<별표 1> “수의계약 배제사유”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.
- ※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3.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른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

- 가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.
- 나.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상대자의 안전·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다.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“안전보건수준 평가표”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(착수)시 발주기관(감독관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.
- 라.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”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,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(감독관 등)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.

4. 견적서 제출

- 가. 본 입찰은 **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, 총액계약**입니다.
- 나.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,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(<http://www.g2b.go.kr>)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.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. 다만,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

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- 라.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5. 입찰보증금

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.

6.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 이하 **낙찰하한율(예정가격 대비 88%)**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 제출자로 합니다.
- 나.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,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- 다.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,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- 라. 예정가격은 **기초금액의 ±3% 범위내에서**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,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.
- 마.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.
- 바.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.
- 사.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업체별도통보 안함)
- 아.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.

7. 견적제출의 무효

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(행정자치부 예규) 입찰 유의서,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.

8. 청렴계약이행준수

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 유의서,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「청렴계약 이행서약서」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9. 기타사항

- 가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

기준(행정안전부예규),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(행정안전부예규), 입찰공고문, 과업 지시서,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나.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다.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

-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, 등록취소,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1조(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: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
- 손해배상 관련
 - 기본·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34조(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)제1항: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
 - 엔지니어링활동 분야
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: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

라.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**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**하여야 하며,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.

마. 예비가격,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: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도로관리팀(☎031-729-5353)
- 계약에 관한 사항: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(☎031-729-5052)
- 전자입찰 이용안내: 조달청 콜센터(☎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4.

성남시 수정구 재무관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(업체명)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업체명 :

대표자 : (인)

안전보건수준 평가표

□ 사업명: 000공사, 000용역, 000위탁 등

[작성자: 착수시(계약상대자), 준공시(발주부서)]

평가항목	수급인 평가기준 (도급인: 발주자, 수급인: 계약상대자)	(착수시) 수립여부 (O,X,해당없음)	(준공시) 이행여부 (O,X,해당없음)
□ 안전보건 관리체제			
1. 일반원칙	안전보건방침 수립(안전관리규정, 지침, 매뉴얼 등) 여부 ※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	O X 해당없음	O X 해당없음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(별첨) 대상 여부	"	"
2. 이행계획	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	"	"
3. 역할 및 책임	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※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·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	"	"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(별첨) 대상 여부	"	"
□ 실행수준			
4. 위험성평가	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https://kraskosha.or.kr) 활용하여 도급사업(사업장 등)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·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(발주자)과 수급인(계약상대자)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	O X 해당없음	O X 해당없음
5. 안전점검	안전점검 및 모니터링(보호구 착용확인 등) 확인 여부	"	"
6. 이행확인	안전조치(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) 이행 여부	"	"
7. 교육 및 기록	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(5년) 여부 ※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	"	"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(붙임5) 대상 여부	"	"
8. 안전작업허가 (필요시)	유해·위험작업(밀폐공간, 맨홀 등)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(발주자) 후 허가 여부	"	"
□ 운영관리			
9. 연·처계	비상연락망 구축(도급인, 수급인, 관계기관 등)	O X 해당없음	O X 해당없음
10. 위험물질 및 설비 (필요시)	유해·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·기구·설비의 안전성 확인	"	"
11. 비상대책	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(고용부, 소방서, 병원 포함)	"	"
12. 안전관리비용 (필요시)	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※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	"	"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(별첨) 대상 여부	"	"

20 년 월 일

작성자(착수시 계약상대자) 직책: 성명: (인)

평가자(준공시 감독자) 직책: 성명: (인)